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윤상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1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5
2. 총괄적 검토	9
3.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	15
나. 국가의 책무, 국민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
다. 유족의 범위 등,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위로 금등 지급의 예외	22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위원회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28
마. 위원회 등의 회의,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35

바.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 강제동원 피해의 결정 등	39
사.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등	45
아. 조세 면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	49
자. 보칙 및 벌칙	57
차. 부칙	6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상현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4. 12. 2.
3.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이 제정된 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이 2015년 말에 공식 종료되었음.

그러나, 그 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으로 국외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피해 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한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르면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게만 피해 지원이 이루어졌는바, 위로금 규모가 과소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후세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강제동원 피해자”란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

하여 적용함(안 제5조).

마.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로 함(안 제6조).

바.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에게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되, 종전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사.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아.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의 환율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자.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차.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국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로금 등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카. 위로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타.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6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며,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39조).

Ⅲ.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총 5개 장 본칙 45개 조문 및 부칙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 법의 제명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후세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둘째, 이 법의 “강제동원 피해자”란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강제동원 희생자”와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를 말하며, 유족의 범위

는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로 함.

셋째, 국가는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그 유족에게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되, 종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함.

넷째,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6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섯째,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며,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함.

여섯째,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

【제정안의 체계】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강제동원 피해,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국민의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유족의 범위 등	
	제7조	위로금	
	제8조	미수금 지원금	
	제9조	의료지원금	
	제10조	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제2장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제11조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국무총리 소속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임위원 1인(위원장) 포함 11인 이내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4조	위원의 보호 등	
	제15조	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제16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9조	위원회 등의 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20조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장 1인,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
	제21조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 국회의 동의를 얻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 연장
	제22조	결과보고서 작성 등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작성 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제23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제24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3장	위로금등 지급에 관한 업무	

구분	조문 내용		비고
본칙	제25조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위원회에 신청
	제26조	신청의 각하	
	제27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방법 등	
	제28조	신청의 기각	
	제29조	피해판정 불능결정 및 재조사	
	제30조	강제동원 피해의 결정 등	
	제31조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제32조	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 금액 결정
	제33조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제34조	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제35조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36조	조세 면제	
	제37조	소멸시효 등	
	제38조	위로금등의 환수	
	제39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	
	제4장	보칙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	비밀 준수 의무	
	제4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설립준비는 이법 시행일 전에 가능
	제3조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다른 법률의 폐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지

2. 총괄적 검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함)이 2010년도에 제정된 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 31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음.

<강제동원조사위원회 개요>

- (설립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등
 - ※ 피해진상규명 대상: 국내외 강제동원 / 위로금 지급대상: 국외강제동원
- (주요업무) 피해진상조사, 위로금 등 지급, 피해관련 자료분석, 유해봉환 및 추도사업 등
- (위원구성) 총 11명(위원장 1, 정부위원 3, 민간위원 7)
- (인력/예산) 78명(공무원 35, 자체 채용 43), 310억원('15년 예산)
 - ※ 존속기간(약 6년) 동안 총 7,273억원(운영예산 1,155, 위로금등 6,118) 소요
- (존속기간) 2010.4.20. ~ 2015.12.31.

※ 자료: 행정안전부

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으로부터 112,671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72,642건에 대해 위로금 등 지급결정을 하여 실제 6,396억 9000만원을 위로금 등으로 지급한 바 있음.

<위로금 등 지급신청 및 처리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위로금		지원금	
			사망·행불	부상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
접수·처리건수		112,671	20,682	33,278	33,329	25,382
지급결정	건수	72,642	17,880	13,993	16,228	24,541
	금액	645,256	360,073	102,185	52,182	130,816
실지금액	금액	639,690	355,785	101,442	51,647	130,816

※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위원회의 존속기간 이후에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더하여 당시 국내 강제동원희생자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¹⁾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 강제동원되었다가 1945년 8월 24일 귀국하려던 조선인 노동자를 태운 채 침몰한 우키시마호 희생자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이 승선자 명부를 제공함에 따라 우키시마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 및 136명의 조선인 강제징용노동자가 수몰되어 희생된 조세이탄광 발굴작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1) 행정안전부는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환자(국외 및 국내강제동원 포함)가 19만명, 국내 강제동원희생자가 65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개요>

- (개요) 1945년 8월 24일 징용된 조선인을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
- (탑승자) 조선인 3,725명(일본정부 공식 발표)
- (사망자) 조선인 524명(일본정부 공식 발표)
- (탑승 명부 제공) 2024년 9월 5일 일본정부가 피해자 일부 명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

<조세이탄광 수몰사건 개요>

- (개요) 1942년 2월 해저 탄광 상부에서 바닷물이 새어들어오는 수몰사고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한 사건
- (유해 발굴 작업) 2024년 10월 29일부터 유해발굴 작업 개시

이에, 제정안은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적정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내외강제동원희생자, 생환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은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결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로서,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임.

<강제동원조사법 입법 경과>

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04.3.5 제정, ‘10.3.22. 폐지)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②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07.12.10 제정, ‘10.3.22. 폐지)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현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10.3.22 제정)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또한, 제정안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²⁾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의 직접적 배상책임이 없는 강제동원에 대한 위로금을 대규모의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³⁾을 의미하는 바,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3)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른 위로금으로 최대 21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위로금 등 지급대상 및 지급액 비교>

구 분		현행법	제정안
위로금 (안제7조)	대상	• <u>국외</u>강제동원 희생자(또는 그 유족)	• <u>국내·외</u>강제동원 희생자(또는 그 유족) • <u>국내·외</u>강제동원 생환자(또는 그 유족)
	대상자	31,873명	217,177명 (위원회 피해조사 기준)
	지급액	4,622억 5,800만원	21조 2,554억 4,200만원 ※1인 1억원으로 일괄 추계/기 지급금액 제외
미수금 지원금 (제5조)	대상	• <u>국외</u>강제동원 미수금피해자(또는 그 유족)	• <u>국내·외</u> 미수금피해자(또는 그 유족)
	대상자	16,228명	추계 곤란 ※현재 <u>국내</u> 강제동원 미수금피해자 파악 불가
	지급액	521억 8,200만원	추계 곤란
의료 지원금 (안제9조)	대상	• <u>국외</u>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 <u>국외</u>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 <u>국내·외</u>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 <u>국내·외</u>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대상자	24,541명 ※생존자 904명('24.1.기준)	추계 곤란 ※현재 <u>국내</u> 강제동원 생존자 파악 불가
	지급액	1,308억 1,600만원	추계 곤란

※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종료된 강제동원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진상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2024. 10. 10., 의안번호 제4642호) 및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새로운 자료 확보 시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강제동원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2024. 9. 23., 의안번호 제4199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제동원조사법 폐지 여부는 해당 법률과의 병합 심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현행법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결정을 통해 제정된 것으로서, 현행법을 폐지하고 대규모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내·외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을 국가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재정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규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후세에 교육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 피해”란 일제의 국가총동원체제 시기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국외로 강제동원된 사람의 경우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의 기간을 포함한다) 중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2. “강제동원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호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4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으로 제정되어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제2항제4호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강제동원 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1조제3호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 나. 강제동원 피해자(제2호나목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로 한정한다)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6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라.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4. “강제동원 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제동원 피해자 중 강제동원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11조제5호에 따라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된 사람

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7호에 따라 국외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된 사람

5. “미수금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제11조제3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6호에 따라 미수금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제정안은 법률의 제명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고, 이 법의 목적을 “태평양전쟁 전후 시기 일제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원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후세에 교육사업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 및 세계평화와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1조) 강제동원 피해, 강제동원 피해자,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를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제정안의 법률 제명과 관련하여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명예회복과 지원은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조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⁴⁾ 타 과거사 관련 법률의 제명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의 제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타 과거사 관련 법률 제명>

사건	법률 제명
일제 강제동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사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 사건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1조(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강제동원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5.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8.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은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고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강제동원조사법이 그 목적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목적에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 규명을 제외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임.⁵⁾

또한,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위로금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7조(위로금)와 관련하여 지급의 목적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안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를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에 더하여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및 생환자로 확대하고 있는 바,

제정안이 입법화할 경우 당시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내강제동원희생자 및 부상을 당하지 않은 생환자까지 위로금의 지급범위가 확대되어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당한 재정

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이 요구되므로, 제정안의 입법화는 현행법의 입법취지, 국가 재정 부담 정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및 제정안에 따른 희생자>

구 분	현행법	제정안
희생자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u>희생자</u> -미수금피해자	-강제동원조사법 대상자 -국외강제동원 <u>생환자</u> -국내강제동원 <u>희생자 및 생환자</u>
위로금 등	<u>국외</u> 강제동원	<u>국외+국내</u> 강제동원
	1. <u>사망, 행불</u> 시 2천만원 2. <u>강제동원으로 장애</u> 를 입은 경우 : 2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1. <u>사망, 행불</u> 시 1억원 2. <u>강제동원으로 장애</u> 를 입은 경우 : 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3. <u>강제동원생환자</u>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 필요 시 의료지원금 지급	

나. 국가의 책무, 국민의 의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및 복지지원사업, 추도·위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의 사업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등 지급 및 복지지원사업, 추도·위령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3조),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의 사업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안 제3조(국가의 책무) 및 제4조(국민의 책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여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재정지원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및 기타 개별 과거사 법률은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유족의 범위 등,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위로금등 지급의 예외

제6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및 자녀
2. 손자녀
3. 증손자녀
4. 형제자매
5. 형제자매의 자녀

② 제7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은 제7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7조(위로금) ① 국가는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강제동원 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호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는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8조(미수금 지원금) 국가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시 환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9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비용과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차액만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로금등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로금,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법률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3.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4.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5.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일본국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제정안은 강제동원 희생자, 강제동원 생존자, 미수금피해자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친족 중 배우자 및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유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6조),

국가로 하여금 강제동원 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 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 희생자 1명당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또한,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 금피해자가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 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환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 안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8조),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 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 등에 는 위로금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안 제10조).

안 제6조(유족의 범위 등)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유족의 범위 등을 배우자 및 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의 자녀 등으로 정하고 있는 바,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은 유족의 범위 등을 배우자 및 자녀, 부모 등으 로 정하고 있고 타 과거사 관련법에서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일 경우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규정 한 입법례가 다수임을 감안할 때,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의 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및 제정안에 따른 유족의 범위>

	강제동원조사법	제정안
1호	배우자 및 자녀	좌동
2호	부모	손자녀
3호	손자녀	증손자녀
4호	형제자매	좌동
5호	신설	형제자매의 자녀

<타 과거사 관련법의 유족 범위>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4·3사건법」, 「여순사건법」, 「노근리사건법」	「거창사건법」
1. 배우자 및 자녀 2. 부모 3. 손자녀 4. 형제자매	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형제자매 3.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형제자매

안 제7조(위로금)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국내·외 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에 대하여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최대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제정안의 위로금은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로금의 성

격과 유사한 바, 국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경우 현행법의 위로금등 지급 금액(최대 2,000만원)은 당시 해외사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⁶⁾

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에 비해 위로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위로금의 지급 액수도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에 비해 5배가 증가하게 되므로, 제정안의 입법화는 입법 필요성, 국가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8조(미수금 지원금)와 관련하여 현재의 미수금 산정방식은 경제성장이 고려되지 않았고, 실제 미수금 지원금의 규모가 적게 산정되어 현재 시점에서 유의미한 금액이 아니어서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수준의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의 입법 취지가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아닌 국가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⁷⁾ 제정안의 입법화는 입법 필요성,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의 입법

6) 현실적인 문제로서, 국내 강제동원자는 그 수가 대규모로 추정되므로 지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실태조사 자체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전원재판부 2009헌마182)

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지, 국가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따르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자 총 217,177명에 대하여 위로금을 최대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약 21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음.

< 위로금 등 지급대상 및 지급액 비교 >

구 분		현행법	제정안
위로금 (안제7조)	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또는 그 유족)	• 국내·외강제동원 희생자(또는 그 유족) • 국내·외강제동원 생환자(또는 그 유족)
	대상자	31,873명	217,177명 (위원회 피해조사 기준)
	지급액	4,622억 5,800만원	21조 2,554억 4,200만원 ※1인 1억원으로 일괄 추계/기 지급금액 제외
미수금 지원금 (제5조)	대상	• 국외강제동원 미수금피해자(또는 그 유족)	• 국내·외 미수금피해자(또는 그 유족)
	대상자	16,228명	추계 곤란 ※현재 국내강제동원 미수금피해자 파악 불가
	지급액	521억 8,200만원	추계 곤란
의료 지원금 (안제9조)	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 국내·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 국내·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대상자	24,541명 ※생존자 904명('24.1.기준)	추계 곤란 ※현재 국내강제동원 생존자 파악 불가
	지급액	1,308억 1,600만원	추계 곤란

※ 자료: 행정안전부

라.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제11조(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강제동원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에 관한 사항
5.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8.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정직·감봉·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의 확보 또는 인멸의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의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 등의 책임면제)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⁸⁾를 설치하고(안 제11조), 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안 제12조),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3조).

또한, 누구든지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안 제14조), 위원회·위원·직원 등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8)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및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는 본질상 같은 위원회임을 감안하여 모두 위원회로 축약하여 표기함.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안 제15조),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안 제16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안 제1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

안 제11조(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규모 등은 현행 강제동원조사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한 규모의 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강제동원조사법」 및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

	「강제동원조사법」	제정안
위원장 및 위원 수	위원장 1명 포함 11인 이내 위원	위원장 1명 포함 11인 이내 위원

참고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 11명, 인력이 78명이었으며 2015년 기준 약 3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원회 개요>

- (설립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등
 - ※ 피해진상규명 대상: 국내외 강제동원 / 위로금 지급대상: 국외강제동원
- (주요업무) 피해진상조사, 위로금 등 지급, 피해관련 자료분석, 유해봉환 및 추도사업 등
- (위원구성) 총 11명(위원장 1, 정부위원 3, 민간위원 7)
- (인력/예산) 78명(공무원 35, 자체 채용 43), 310억원('15년 예산)
 - ※ 존속기간(약 6년) 동안 총 7,273억원(운영예산 1,155, 위로금등 6,118) 소요
- (존속기간) 2010.4.20. ~ 2015.12.31.
- (위원회 심의 사항)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애의 판정
 - 위로금등의 지급
 - 결과보고서 작성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 중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결정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된 바,

해당 사항들은 제정안에 따라 설립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안 제39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와 병합하여 위원회와 재단 중 어느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은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제정안에는 핵심사항인 피해 진상조사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되는 것은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고,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진상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상조사는 국가기관인 위원회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서 진상조사를 배제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보임.

< 「강제동원조사법」 및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강제동원조사법」	제정안
<u>대일항쟁기</u>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강제동원 피해판정 불능결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행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해당 여부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u>정정</u>
<u>국외</u>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유족 해당 여부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유족 해당 여부
<u>국외</u> 강제동원 생환자 해당 여부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u>유족</u> 해당 여부
<u>국외</u>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	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
위로금등의 지급	좌동
결과보고서 작성 등	좌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좌동

마. 위원회 등의 회의,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제19조(위원회 등의 회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 내에 업무를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업무처리 상황과 존속기간 내 완료를 위한 계획 또는 대책을 매 반기별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 기간은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6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22조(결과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대법원규칙에

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게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안 제19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여(안 제20조),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위원회가 존속하도록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1조),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안 제22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4조).

안 제19조(위원회 등의 회의)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바,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은 분과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안 제21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위원회가 존속하되, 존속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량 및 타 과거사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과거사 관련법상 위원회 존속기간 비교 >

구분	반민족규명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존속기간	• '05.5.31.~'09.11.30. (4년 6개월)	• (1기 진화위) '05.12.1~'10.12.31. (약 5년 1개월) • (2기 진화위) '20.12.10.~'25.11.26. (약 4년 11개월)	• '22.1.21.~'25.10.4. (약 3년 8개월) ※ 최근 개정으로 '26.10.4.까지 존속

인사혁신처는 안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항 후단⁹⁾과 관련하여

9)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

파견은 기관 범위 밖에서 인력을 활용하는 예외적인 인사제도로서 기관 간 상호 동의를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관의 균형적·효율적 인력활용, 파견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관의 인사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방의 파견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기관 고유의 인사권한을 저해하는 등 인사운영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참고로,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0. 10, 제4642호)은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바.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 강제동원 피해의 결정 등

제25조(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 ①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나 제31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하였던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27조(강제동원 피해 조사 방법 등) ①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2.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3.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관련 자료나 물건의 제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신청의 기각)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및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 조사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피해판정 불능결정 및 재조사) ① 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 신청 후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각하 결정, 제28조에 따른 기각결정 및 제1항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판정 불능결정 이후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다.

제30조(강제동원 피해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하여금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를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안 제25조),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 조사나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으며(안 제26조),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위로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진술 청취, 자료 제출요구,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 위원회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 및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강제동원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8조),

위원회가 조사 신청 후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피해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된 경우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9조).

또한,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강제동원 피해 여부,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등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30조).

안 제25조(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와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강제동원 피해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강제동원 관련 새로운 자료의 확보 및 분석 과정에 있어 새로운 자료 확보에 따른 피해조사의 필요성 등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피해신청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강제동원 관련 위원회 연혁>

-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04.11.10~'10.3.22)
- ②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08.6.18~'10.3.22)
- ③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10.4.20~'15.12.31)
- ※ ①(진상규명)과 ②(희생자 지원)의 업무를 통합하여 ③ 설치

※ 자료: 행정안전부

<강제동원 관련 위원회 피해조사 결과>

■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조사

- (조사신청) ^{1차}'05.2.~6., ^{2차}'05.12.~'06.6., ^{3차}'08.4.~6.
- (조사결과) 신고226,583건, 조사225,812건, 결정217,296건

구분	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기타
피해조사 건수*	225,812	33,220	36,734	155,176	338	344

* (조사건수) 신고건수 226,583 - 중복신고 1,747 + 직권재조사 468 + 재심의 508

※ 자료: 행정안전부

안 제27조(강제동원 피해 조사 방법 등)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강제 동원조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유해 등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를 삭제하고 유해의 봉환 등에 관한 사항을 일제강제 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을 위원회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중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강제동원조사법」 및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 사항 >

	「강제동원조사법」	제정안
1호	신청인·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증언 또는 진술청취	작동
2호	관계인,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작동
3호	강제동원 피해 발생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작동
4호	사망자의 유족이 아닌 자로서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거나 유해의 소재를 알고 있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 요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5호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요청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호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안 제30조(강제동원 피해의 결정 등)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원회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강제동원 피해 여부,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결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바,

강제동원조사법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
제동원 피해 여부,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결
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해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
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⁰⁾

1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사.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등

제31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8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9조에 따른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30조에 따른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32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강제동원 피해 조사 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재심의 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정안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안 제31조),

위원회로 하여금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며(안 제32조), 각하결정, 기각결정, 피해판정 불능결정,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3조).

또한, 제정안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로금 등을 지급받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안 제34조),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안 제35조).

안 제31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부터 제35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까지는 「강제동원조사법」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¹¹⁾ 제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①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그 밖의 관련 증거자료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보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로금등 지급 신청의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된 서류를 받은 날을 지급 신청일로 본다.

③ 그 밖에 심의·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①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24조에 따른 기각결정, 제25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제26조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결정, 제28조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정서 정본을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피해신고인이나 피해진상조사신청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송달을 할 때에 송달대상자에게 재심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다고 보임.

다만, 안 제31조(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위로금 등의 신청 수요 및 향후 새로운 자료의 추가 확보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예측이 어렵고, 지급 신청에 따라 피해자·유족 등 관련 사실의 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3년간 상시적인 신청 기간을 규정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재정 여건, 업무수행조직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강제동원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기간 개정 연혁>

구 분	「국외강제동원자 지원법」 ※'10.3.22. 폐지	「강제동원조사법」			
		① 제정 (‘10.3.22.시행)	② 1차 개정 (11.5.30.시행)	③ 2차 개정 (‘11.8.4.시행)	④ 4차 개정 (‘13.12.30.시행)
신청 기한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11.6.30.아내 ※ 법 시행일로부터 약 15개월	’11.11.30.아내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12.6.30.아내 ※ 법 시행일로부터 약 11개월	’14.6.30.아내 ※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재심의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위로금등의 지급) 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아. 조세 면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

제36조(조세 면제)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7조(소멸시효 등) ① 제7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38조(위로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39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 ① 국가는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며,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재산 종류 및 평가액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및 조직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11. 정보 공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2. 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3.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사업
 4.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봉환 사업
 5.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공간의 조성 및 관리 등 추도위령사업
 6. 국외 희생자 추도순례 사업
 7. 미수금, 우편저금 등 미지급 공탁금 등의 환수를 위한 다른 나라 정부와의 교섭 및 소송 지원 사업
 8. 사료관, 박물관, 역사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9. 정부에 등록된 피해 단체 및 법인과 교류협력사업
 10. 관련 행정기관의 위탁사업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 및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⑨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7항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익금
- ⑩ 재단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행정안전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⑬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정안은 위로금등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안 제36조),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7조).

또한,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재단으로 하여금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9조).

안 제36조(조세 면제)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¹²⁾에서는 해당 두 법률 및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1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②(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

물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들을 아울러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7조(소멸시효 등)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 기간 등 신청인의 권리 행사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 과거사 및 민주화 법률에서는 통상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생략)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안 제39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와 관련하여,

제정안에서 새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신재단”이라 함)은 안 부칙 제5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¹³⁾에 따르면, 현재 민법에 의거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구재단”이라 함)을 대체하게 되고, 현재의 구재단은 해산되며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임직원 등은 신재단으로 귀속되게 됨.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신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사업 등 사업영역이 구재단에 비해 상당폭 확장되고 있는 바, 법률에 근거를 둔 국가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와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추진의 책임성 및 효과성이 현행보다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임.

1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부칙

제5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사 관련 법률 및 유사 입법례¹⁴⁾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법인의 법적 성격은 법률에 근거한 국가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현행 강제동원조사법 역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과 같은 국가법인 형태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제정안에서는 현재 위원회의 업무로 되어 있는 피해자 유해발굴 및 봉환 사업을 신재단의 사업 영역으로 규정하는 등 사업을 대폭 추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추가되는 사업을 신재단이 제대로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봄.

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지원 등) ①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제동원법에 따른 관련 재단 및 제정안에 따른 재단 추진 사업>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관련 재단	제정안에 따른 재단
1호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
2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3호	일제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와 인권 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사업
4호	그 밖의 관련 사업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봉환 사업
5호	-	강제동원 희생자 추도공간 조성 및 관리 등 추도위령사업
6호	-	국외 희생자 추도순례 사업
7호	-	미수금, 우편저금 등 미지급 공탁금 등의 환수를 위한 다른 나라 정부와의 교섭 및 소송 지원 사업
8호	-	사료관, 박물관, 역사관 등의 건립 및 운영 사업
9호	-	정부에 등록된 피해 단체 및 법인과와의 교류협력사업
10호	-	관련 행정기관 위탁
11호	-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개요>

□ 연 혁

- ('12.3.9.)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발족(총 8명)
- ('14. 4. 16.) 행정안전부에 재단 설립허가 신청
- ('14. 6. 2. / 3.) 재단 설립허가/등기
- ('15. 1. 29.) 기타공공기관 지정/ ('16. 3 .7.) 법정 기부금단체 지정(기재부)

- ('16.3.30./'20.1.1./'23.1.1./'24.1.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위탁관리 운영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설립허가) 등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법」 제37조(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출연)
- 조직구성
 - (조 직) 1사무처 2국(피해지원국, 경영지원국) 1관(역사관)
 - (정·현원) 53명/현재 41명(비상임 이사장 포함) * '24. 12. 31. 기준
- 주요 업무
 -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도순례 등 위령사업
 - 해외 추도공간 조성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조사·연구, 학술사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복지지원, 역사관 운영·관리 등
- 2025년도 예산 : 6,916백만원(민간경상보조, 위탁사업, 자체사업)
 - 민간경상보조 3,827백, 위탁사업(역사관) 2,885백, 자체사업 204백

※ 자료: 행정안전부

자. 보칙 및 벌칙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민간단체 및 그 관계자 또는 재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재단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재단의 임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4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재단 또는 금융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40조),

위원회 위원 및 직원, 감정인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문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수행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안 제41조),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음(안 제43조).

안 제44조(벌칙)의 업무상 비밀 누설 시 부과되는 형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과 그 외 유사 입법례¹⁵⁾를 고려했을 때 적절한 수준

15)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벌칙) ①~③ (생략)

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으로 보이나, 안 제4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정보·문서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안 제45조(과태료)는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와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와 실지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규정될 필요성이 있고,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을 참고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¹⁶⁾

처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7조(벌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1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과태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계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이 법으로 다시 구성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가 승계한다.

제4조(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가 승계하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행위 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현행 강제동원조사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음.

원활한 법률 시행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강제동원 조사법 폐지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해당 법률의 심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 밖의 사항은 제정안 입법에 따른 현행 업무, 재단 등에 대한 경과 조치 규정으로 법제원칙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1

한일청구권협정 후속조치(1차 지원)

<한일청구권협정('65.6월) 이후 후속조치>

① 보상재원 마련, ② 관련법률 제정, ③ 보상실시 순으로 실시

□ 보상재원 마련

- '65.6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타결
 - ※ 3억불은 현금이 아니라 '65~'75년간 **현물 및 용역 형태로** 받았음
 - ※ 3억불의 현재가치 : **물가상승률(15.6배, '70년~'04년)기준, 약 1.7조원**
- **무상자금(3억불) 물자판매금액(1,052억원)**의 대부분을 **경제개발** 재원으로 할당하고, 일부(92억, 9%)만을 **피해자보상**을 위해 배정
 - ※ 당시 정부는 청구권자금은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자금이며, **전 국민이 피해자**이므로 경제개발에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접근

□ 관련법률 제정 ※ '82.12.31. 보상관련법률 폐지

- 청구권자금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66.2.)
 - '66년 정부와 야당은 각기 **보상법(안)**을 제출했으나 보상비율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과 회기만료로 폐기**
 - ※ 피해자들은 민간청구권자협의회(67.4월)를 구성, 수차례 시위 및 진정서 제출
-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제정('71.1.)
-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제정('74.12.)

□ 보상 실시 ※ 신고: '71.5. ~'72.3.(10개월), 보상: '75.7~'77.6.(2년간)

- 협정체결 6년 후인 '71년 청구권신고법, '74년 청구권보상법을 제정, 실제보상은 '75년부터 시작

<참고> 보상건수 및 보상액

구 분	신고건수	보상지급 결정		비 고
		건 수	금 액	
인명보상	11,787	8,552	25.65억원	사망자 1인 30만원
재산보상	97,753	74,967	66.22억원	보상액이 적어 약 2만 명 포기
계	109,540	83,519	91.8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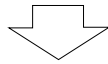
- ※ 강제동원 부상자·생존자, 보상대상 제외(입증곤란, 부상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문제 등)
- ※ 대간첩작전 지원시 사망한 향토예비군 지급기준에 따라 **'사망자 1인당 30만원'** 지급

참고2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등(2차 지원)

□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04.3.5. 제정, ‘10.3.22. 폐지)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07.12.10. 제정, ‘10.3.22. 폐지) ※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3.22 제정·시행)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대일항쟁기위원회 활동

- **(설립목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 지급 등
※ 피해진상규명 대상: 국내외 강제동원 / 위로금 지급대상: 국외강제동원
- **(근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 (주요업무) 피해진상조사, 위로금 등 지급, 피해관련 자료분석, 유해봉환 및 추도사업 등
- **(위원구성)** 총 11명(위원장 1, 정부위원 3, 민간위원 7)
- **(인력/예산)** 78명(공무원 35, 자체 채용 43), 310억원(‘15년 예산)
※ 존속기간(약 6년) 동안 총 7,273억원(운영예산 1,155, 위로금등 6,118) 소요
- **(존속기간)** ‘10.4.20. ~ ‘15.12.31.

< 존속기간 연장 경과 >

구 분	존속기간	연장방식	연장사유
1차 연장	‘12.1.1. ~ ‘12.12.31.	법 개정	피해진상조사기간 및 위로금등 지급신청기간 연장
2차 연장	‘13.1.1. ~ ‘13. 6.30.	국회 동의	위로금등 지급 심사 미결
3차 연장	‘13.7.1. ~ ‘13.12.31.	국회 동의	위로금등 지급 심사 미결, 신규자료 입수에 따른 직권 재조사 필요
4차 연장	‘14.1.1. ~ ‘15. 6.30.	법 개정	위로금등 지급신청기간 연장, ‘13년 발견 명부 조사 필요
5차 연장	‘15.7.1. ~ ‘15.12.31.	국회 동의	위로금등 지급 심사 미결

□ 대일항쟁기위원회 활동결과

- (자료조사) 명부(왜정시피징용자명부, 일정시피징용자명부, 공탁서 등) 74종, 강제동원 관련 기록 문서 8종 등 조사·분석
- (역사관 건립) '14.5.15 준공, '15.12.10 개관
- (추모사업) 사할린 한인묘 조사(66개소), 추모탑 건립(3개국), 추도순례 19회 등
- (피해조사) 신고 **226,583건**, 조사 **225,812건**, 결정 **217,296건**

구분	계		군인	군무원	노무자①	위안부②	기타③
조사건수*	225,812		33,220	36,734	155,176	338	344
피해인정	217,296		32,647	36,356	148,174	23	96
국내	23,424	193,872					
국외							
사망	18,945		3,204	8,491	7,234	-	16
행방불명	1,059	17,886					
행방불명	6,584		1,052	975	4,545	-	12
행방불명	165	6,419					
후유장애	3,394		417	575	2,399	1	2
후유장애	281	3,113					
귀환 후	145,056		16,474	19,578	108,942	7	55
사망	12,459	132,597					
귀환 후	43,317		11,500	6,737	25,054	15	11
생존	9,460	33,857					

* (조사건수) 신고건수 226,583 - 중복신고 1,747 + 직권재조사 468 + 재심의 508

① 日측이 노무자와 관련된 각종 명부(급여, 저금, 연금)가 없어 당시 80%가 **인우보증인** 진술에 의해 인정

※ 과거사업무지원단에서 노무자 관련 명부를 日측에 지속 요구중('17년 2회, '18년 2회)

② 위안부 23건은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건수로 현재 '여가부'로 이관

③ 기타 : 이중 동원과 동원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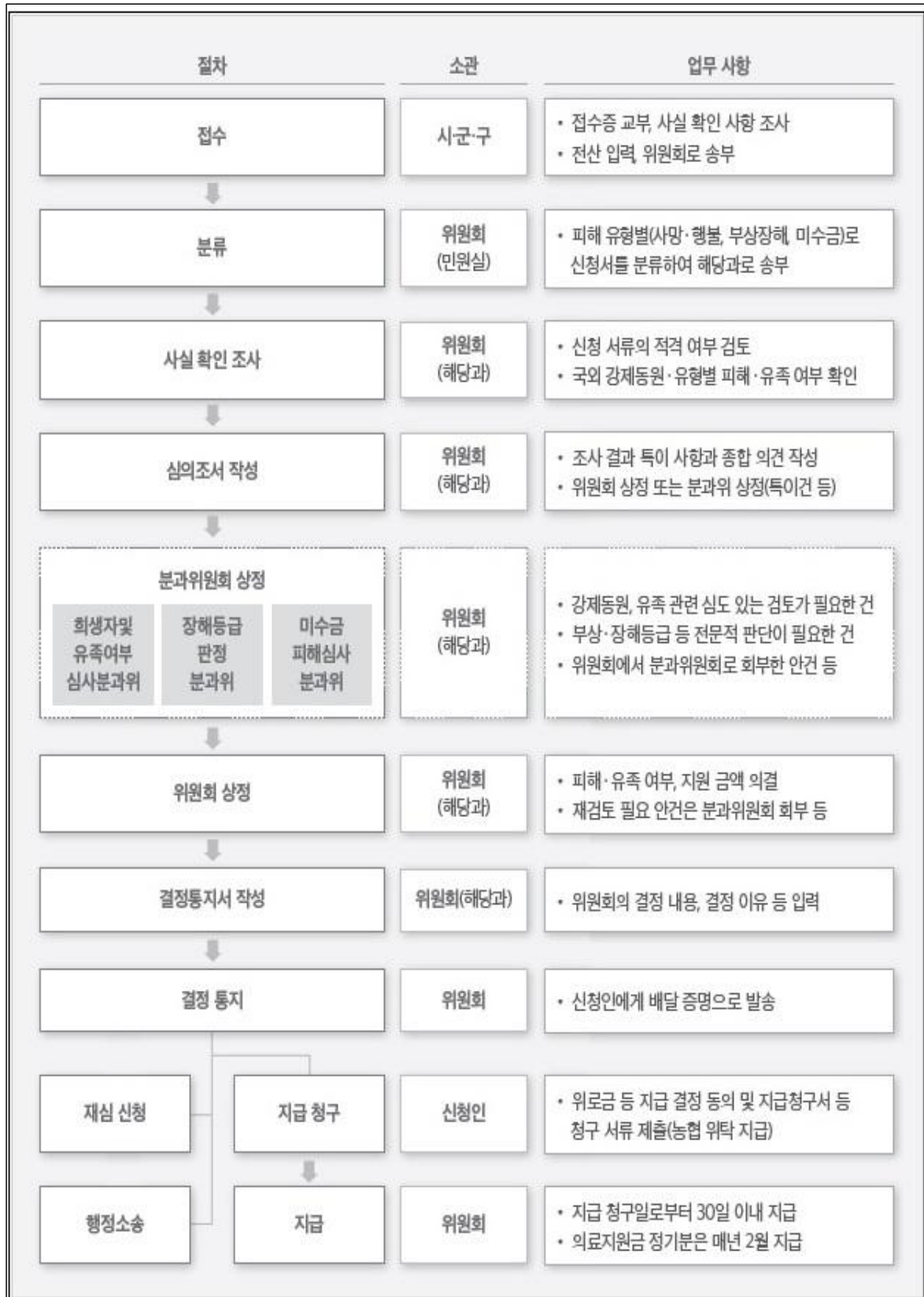
- (위로금 등 지급결정) 접수된 112,557건에 대한 지급심사(총 6,184억원) 완료

(단위: 건/백만원)

구분	계	위로금		지원금	
		사망·행불	부상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
접수·처리건수	112,557	20,682	33,278	33,329	25,268
지급결정	건수	72,631	17,880	13,993	16,228
	금액	618,430	360,073	102,185	52,182
기각·각하 건수	39,926	2,802	19,285	17,101	738

참고3

대일항쟁기위원회 위로금 등 지급 절차



참고4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현황

□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 (소관) 행정안전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 ※ '대일항쟁기위원회('10.4.20.~'15.12.31.) 활동종료 후 기능 이관('16.1.)
- (지원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내지 제6조
- (지원내용) 대일항쟁기위원회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 심사·결정을 통해 지급 결정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지급

< 위로금 등 지급 기준 >

구분	대 상	지급기준
위로금 (법 제4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사망·행방불명자)의 유족	1인당 2천만원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유족	1인당 3백만원~2천만원
미수금 지원금 (법 제5조)	미수금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2천원
의료지원금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	1인당 매년 80만원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비

* 대일항쟁기(1938.4.1.~1945.8.15.) 일제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 제공 등을 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미수금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법 제2조 제5호)

□ 위로금 등 지급신청 및 처리현황('24.12.말 기준)

(단위: 건/백만원)

구 분	계	위로금		지원금	
		사망·행불	부상	미수금지원금	의료지원금
접수·처리건수	112,671	20,682	33,278	33,329	25,382
지급결정	건수	72,642	17,880	16,228	24,541
	금액	645,256	360,073	52,182	130,816
실지급액	금액	639,871	355,884	51,714	130,816

※ 자료: 행정안전부